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분묘 보상계획 열람 공고

건설부고시 제465호(1971.08.06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540호(2021.09.30.)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변경 결정되었으며,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19-93호(2019.05.16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구로구고시 제2022-44호(2022.03.17.)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고시한 구로구 고시 제2023-23호(2023.02.16.) 도시계획시설사업(온수도시자연공원)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에 대하여 「온수도시자연공원」조성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분묘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 공고하오니,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보상대상(분묘)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생생한

1. 사업개요

가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

나. 사업의 명칭 : 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(텃골지구)

다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

라. 사업기간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5,12,31,까지

마. 사업위치: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산 5-84번지 일대

2. 보상대상 : 분묘 2기

○ 구로구 오류동 산5-84번지(2기)

※ 위 토지에 소재한 분묘 등 권리일체

3. 열람(이의신청)기간 및 장소

가. 기 간: 2024. 03. 15. ~ 03. 29.

나. 장 소 : 구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팀(본관 4층)

- 주 소 :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(구로동, 구로구청)

- 연락처 : (전화) 02-860-3109 (팩스) 02-860-8118

다. 열람방법 : 열람기간 분묘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

를 확인 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

- 라. 이의신청방법 : 공고기간 동안 보상대상 분묘 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열람기간 내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셔야 하며,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음으로 간주
- 4. 보상시기 : 보상액 산정완료 후 개별통지(협의)
- 5. 보상절차 및 방법
- 가. 보상계획 공고 ⇒ 조서열람 및 이의신청 ⇒ 감정평가 및 보상액산정 ⇒ 손실보상협의
 - ⇒ (협의 불성립시)수용재결⇒ 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

(유연분묘) 손실보상 협의 ⇒ 분묘개장 ⇒ 보상금(분묘이전비 등) 지급 (무연분묘) 개장공고 ⇒ 무연분묘 개장허가 ⇒ 화장 후 봉안당 안치

- 나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7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결정하며, <u>분묘의 연고자는 분묘를 이장한 후 증빙서류를</u> 구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**다.** 보상대상, 보상금액, 보상절차, 보상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개별통지할 예정입니다.
- 라. 공고 결과 연고자가 없는 경우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로 간주하여, 무연 분묘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된 관련 절차를 마친 후 분묘개장 등을 시행하고 일정한 장소, 기간을 정하여 봉안할 예정입니다.
- 마.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,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(이의신청을 거쳤을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) 행정소송 제기 가능합니다.

6. 기 타

- **가.** 열람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작성된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되며, 연고자는 연고자 접수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물건(분묘)의 연고자(관계자)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,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.
- **다.** 보상공고 이후 식재되는 수목, 설치하는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, 보상공고 후 사업조성지 내에 식별이 불가능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 대해서도 본공고로 갈음합니다.
- 라. 상기 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, 예산 등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**마**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재무과(T.02-860-310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u>물 건 조 서</u>

○ 사 업 시 행 자 : 구로구청장

○ 사 업 의 명 칭 : 도시계획시설(공원)조성사업/온수도시자연공원(텃골지구)

일련 번호	소재지 지번	물건의 종류	구조 및 규격	수량	연고자(관계인)		소유권	ul a
					성 명	주 소	이외의 권리내용	비고
1	오류동 산5-84	분묘	단장	2	정O윤	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OOO, OOO동 OOO호		